

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91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신설함(안 제11조)

-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(2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(2)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사항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6. 10. 24. ~ 11. 14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도내 조례 개정 현황

개정(3)	입법예고 등(9)	미개정(5)
김해시, 사천시, 고성군	창원시, 통영시, 양산시, 거제시, 산청군, 함양군, 함안군, 남해군, 하동군,	밀양시, 진주시, 합천군, 창녕군, 의령군,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”을 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”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)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(2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탁 대상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<u>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0조(위탁 대상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를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제11조(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)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「<u>관광진흥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3호가목(2)에 따라 「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-----</p>